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59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최형두 · 김예지 · 이준석
성일종 · 서지영 · 서범수
김대식 · 신성범 · 곽규택
우재준 · 정성국 · 최보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못한 자”를 “못한 자 또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로, “방송통신사업자의”를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0항까지”로 한다.

1.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p> <p>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p> <p>4. ~ 6. (생략)</p> <p>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6항까지-----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100 분의 3----- ----- -----.</p> <p>1.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p> <p>2.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 <p>3.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p>

③ (생략)

<신설>

<신설>

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 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⑩ ----- 제9항-----

-----.

⑪ ----- 제10항까지-----

-----.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 제7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7항-----

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